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령 해설(Ⅱ)

특허청

2.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과 그 절차

1)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과 취소 절차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은 산업재산권으로서 효력발생요건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설정등록시, 창작성 등의 실체검사를 하지는 않으나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는 등 이 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설정등록 신청인
- ○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 — 창작자로 규정함

주) 본고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93. 9.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적응과 대처능력의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특허청의 자료를 인용 게재한 것이다. 국내기업의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기술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 업무상 창작은 법인이 창작자임
- ○ 재외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 절차 수행

② 신청서
- ○ 신청인 및 창작자의 서지적 사항
- ○ 창작 및 상업적이용의 연월일
- ○ IC의 분류 등 기술적 사항
- ○ 첨부자료목록(신청인, 도면, IC샘플 등)

③ 신청서 접수

④ 설정 등록
- ○ 각하 사유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
- ○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 행함
- — 공시, 열림 및 복사 등 서비스
- ○ 배치설계권은 양도 가능
- ○ 전용 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질권 설정

⑤ 신청 각하
- ○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 ○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 ○ 상업적이용일후 2년이 경과한 경우
- ○ 신청서의 첨부자료 등이 불비한 경우
- ○ 신청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를 불납한 경우

⑥ 취소 사유
- ○ 조약의 규정에 위반
- ○ 통상이용권 재정후 2년이상 국내 불이용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 ○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가 아님
- ○ 기타 법령상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

2) 설정등록신청의 경우 첨부자료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적 첨부자료와 그 필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선택적 첨부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필요적 첨부자료는 보호대상인 배치설계를 특정하여야 하는 도면·IC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

3) 설정등록신청서의 구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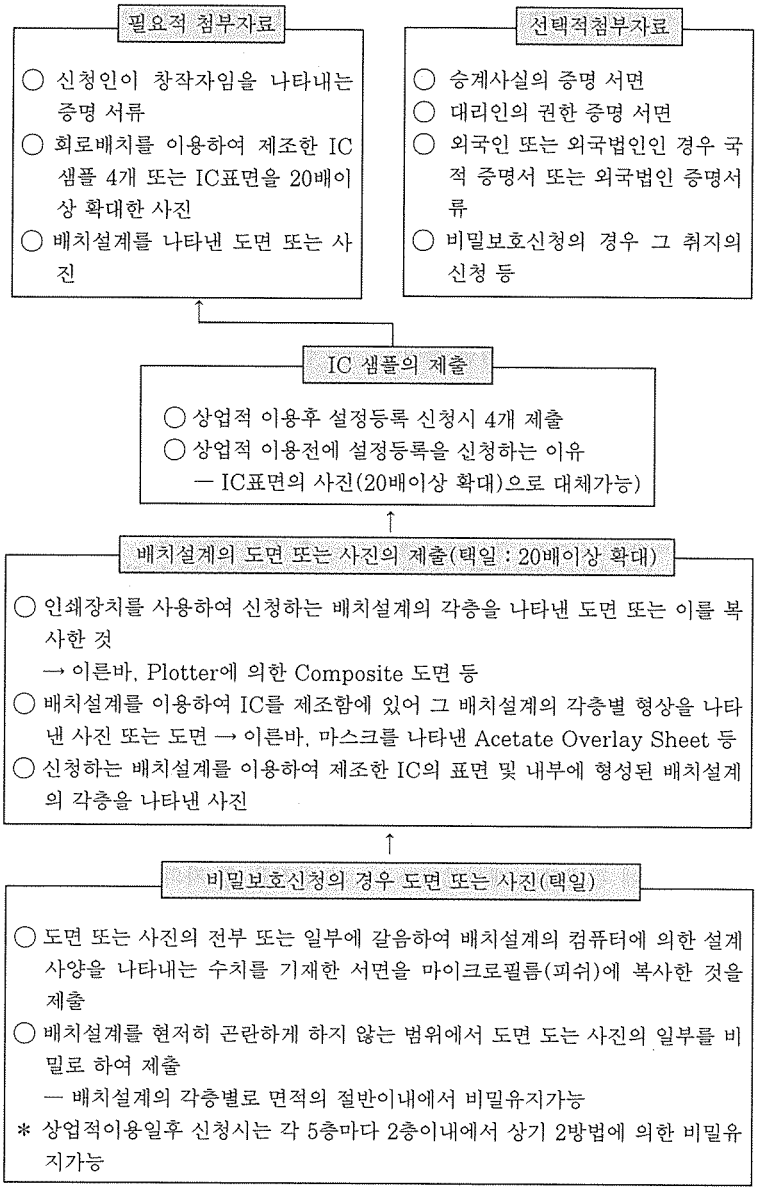

기재방법

가. 일반사항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페이지의 설정등록신청서의 서식에 의하여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은 특허청『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등록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도 되지만, 직접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A4(210㎜×297㎜)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치설계의 도면 또는 사진 등 첨부자료도 대략 A4규격이 되도록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된 서식은 설정등록신청서, 반도체집적회로 보관봉투 등이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등록신청 관련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적증명서 및 기타 서류에 있어서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 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란에 계속하여 기재하여 주고 이 경우에는 2페이지 이상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창작자가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창작자의 성명란에 "(신청인과 동일함)"과 같이 기재하고 그의 성명·주소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창작자에 있어서 국가·법인·단체 및 그밖의 사용자("법인등"이라 함)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또는 창작자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전화번호"란에는 해당번호앞에 지역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서류의 목록은 첨부된 해당 서류와 부합되어야 한다.

나. 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1) 신청인 또는 창작자가 자연인인 경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명확히 기재한다.

(2) 신청인 또는 창작자가 법인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쓰고, "주소"란에는 법인의 본사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란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을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예) : MITI001, MITI002 등

(4)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과 상업적이용의 연월일은 법에 의하여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5) 특별기술 등의 비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6) "반도체집적회로의 분류"는 (1) 구조, (2) 기술 및 (3) 기능중 해당하는 □안에 V표시를 하고, 그 반도체집적회로의 용도 등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간단한 설명의 예〉

○ 16M MASK ROM
○ 8비트 싱글칩 마이크로 컴퓨터
○ 20,000게이트의 게이트어레이
○ PCM 디지탈 오디오용 신호처리 집적회로 등

(7)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 첨부자료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9) 동시에 2이상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것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0) (9)의 경우에 그 구별을 쉽게하기 위한 부기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설정등록신청서(1), 설정등록신청서(2) 등

(11) 2인이상의 신청인이 공동신청하는 경우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창작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공동으로 설정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류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를 "창작자"라 함)이 배치설계권이 설정등록 신청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증명서류는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명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나타내는 설명 : 아래의 "예시"를 참조

(예시 1)

이 건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TDA1547은 1비트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기능을 구비한 반도체집적회로로서, 신청인이 선등록한 TDA1540에 비하여 보다 미세한 제조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반도체집적회로이며, 이의 배치설계를 신청인이 1992. 12. 14~1993. 9. 1간에 걸쳐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임.

(예시 2)

이 건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TMS320C15는 디지탈 시그날 프로세서로서 신청인이 창작한 TMS320 계열의 일종이고 확장 온칩 RAM과 ROM을 제공하며, CMOS기술을 사용하여 1992. 12. 14~1993. 9. 1간에 신청인이 새로이 창작한 것임.

—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대리인의 성명·주소나 영업소 및 주민등록번호

위의 『설명서』에 첨부 도면 또는 사진에 대한 확대 배율 및 각 층별 설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도 된다.

5) 신청인에 있어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설정등록의 신청인이 배치설계의 창작을 한 자의 승계인인 때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매매·증여 등에 의한 때에는 양도증서, 상속에 의한 때에는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법인의 합병에 의한 때에는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하나의 승계에 대하여 2이상의 설정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신청서중 어느 하나에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첨부자료"란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함으로써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1993년 09일 10일에 제출한 설정등록신청서(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 MITI001)에 첨부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생략함』

승계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를 "첨부자료"란에 기재하고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설정등록신청과 전용이용권 설정 등 기타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나 영업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등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수임자 및 위임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그 신청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등
— 위임할 사항 : "예시"의 내용 참조

(예시)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신청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등록신청
- 특허청장의 처분에 대한 소원 및 행정소송의 제기 등 이 법에 의한 일체의 권한
- 배치설계관리인의 권한
- 복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

— 작성연월일
— 수임자 및 위임자의 기명 및 날인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리행위를 업으로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7) 신청인이 재외자인 경우의 유의 사항

외국인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간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를 "제외자"라 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자의 배치설계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를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함)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제외자는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하는 경우 또는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중에는 반드시 배치설계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8)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 있어서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의 배치설계는 조약에 따라 보호되지만 법령에 의해,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있으며, 아울러 제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선임·등록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국적을 증명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적증명서 등(Corporation Nationality Certificate 또는 Individual Nationality Certificate)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적증명서 등은 일정서식이 있지는 않지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 주소 및 성명)
—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
— 발행연월일
— 공증인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

9) 특수기술 등의 비밀보호를 신청하는 방법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신청서 및 첨부도면

등에 관한 열람 및 복사청구(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에 대한 복사청구 제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신청인이 타인에게 완전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한도내에서 첨부도면 등의 비밀유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기술에 의한 생산방식 등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설정등록신청서의 비밀보호신청란에 "예"라고 표시함
— 비밀보호신청서를 기재하여 첨부
— 도면 또는 사진 등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작성 및 제출

비밀보호신청서 작성의 "예시" (생략)

비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 도면 등은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치설계의 상업적이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싯점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그 방법이 구분되는데 상업적이용후의 신청시에는 비밀보호의 폭이 보다 제한되어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하든지 최상층의 배치설계로부터 기산하여 5개층당 2개층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첨부도면 등의 조치방법은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분을 컴퓨터 자료로 가공하거나 보이지 않게 제출하는 2가지가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배치설계의 상업적이용의 연월일 전에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면 또는 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여 그 배치설계에 대하여 컴퓨터에 의한 설계형태의 수치를 기재한 서면을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에 복사한 것을 제출하는 것

(2) 그 배치설계의 특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면 또는 사진을 일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이하 이 부분을 『비밀부분』이라 한다) 제출하는 것. 다만, 이 경우 비밀부분의 면적은 그 배치설계의 각층에 대하여 전체 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배치설계의 상업적이용의 연월일 이후에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면 및 비밀부분을 포함하는 각 층의 도면 또는 사진은 최상층의 배치설계로부터 기산하여 각5층마다 2층내의 범위가 되도록 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설정등록 등의 신청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설정등록 및 기타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나 관련서류의 열람·복사 및 배치설계등록원부의 등본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수수료의 금액 : 건당〉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 50,000원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 300,000원
• 전용이용권의 설정등록 : 50,000원
• 각종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 : 10,000원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특허등록령시행규칙과 특허법 등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의 기재방법과 납부절차는 특허료 등의 경우와 동일하다.

영수증은 납부자용·서류첨부용·특허청통보용 및 수납은행용의 4매가 1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서류첨부용을 신청시에 제출하여 주면 된다.

< '94. 1號에 계속 >